

KrIGF 2026 ·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저작물 포함 여부 판별 메커니즘과 거버넌스 수립 방안

발표자: 한서연, 김세현, 이은선 (2026 EG@IG 지식재산권과 AI팀)

2026년 7월 2일

세션 개요

01

문제 진단

NYT v. OpenAI가
드러낸 구조적 불균형
과 입증의 벽

02

법제 비교

한국 현행 법제와
EU · 일본 제도의 거리

03

제도적 선택지

공시 · 옵트아웃 ·
독립 검증의 세 갈래

04

거버넌스

통제 · 검증 · 책임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05

논의 · 기대

두 개의 핵심 질문과
공존 가능한 방향 모색

세션의 목적

법제 공백을 **진단**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공존 가능한 거버넌스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이 논의가 이후의 입법·정책 과정에서 실질적 참고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논의 배경 — 뉴욕타임즈 v. OpenAI

2023. 12

뉴욕타임즈, OpenAI · Microsoft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쟁점

GPT 계열 모델이 뉴욕타임즈의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켰다는 것. 소장에는 모델이 해당 기사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출력 결과물이 증거로 첨부됐다.

본질

AI 서비스가 유료 구독 없이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여 언론사의 핵심 수익 시장을 대체한다는 주장. 단순 인용을 넘어 침해의 문제로 확장됐다.

원고 — 뉴욕타임즈

복제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학습 행위 자체가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며, 무단 학습이 곧 시장 대체로 이어진다.

피고 — OpenAI

공정이용(Fair Use) 항변

해당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뉴욕타임즈의 침해 주장에 맞섰다.

현행 법체계가 AI라는 기술 환경을 전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불균형

권리자는 침해 사실을 알고 있어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AI 기업은 공정이용을 주장하며 면책의 여지를 반복적으로 확보한다. 결국 권리자가 '블랙박스' 내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역설이 남는다.

핵심 딜레마

①

의거성 입증 책임

침해를 주장하려면 침해자가 그 저작물을 실제로 학습에 사용했다는 '의거성'을 권리자가 입증해야한다. 그러나 그 증거는 모두 기업 내부에 있다.

②

학습 데이터 = 영업비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셋은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로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된다. 외부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목록조차 확인할 수 없다.

③

역추적 불가

저작물은 수조 개의 파라미터 속에 수치화되어 압축 저장된다. 특정 저작물의 포함 여부를 외부에서 역추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심 질문

AI 학습데이터를 누가 통제하고, 누가 검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한국 법제의 현황

저작권법

제16조 ~ 제22조 · 제35조의5

복제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고(제16~22조),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5)으로 예외적 면책의 여지를 열어 양측의 이해를 조율한다.

한계 AI 학습을 직접 겨냥한 TDM 면책·학습데이터 관련 조항은 아직 부재한 상태임.

2025 가이드라인

문체부 · 한국저작권위 (2025.6)

기존의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기준을 AI 결과물에도 적용한다는 원칙을 명시.
권리자에게는 robots.txt·학습 금지 문구를, 사업자에게는 기술적 필터링·적법 데이터 확보를 권고.

한계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 수준이며, 실효적 집행에는 한계를 가짐.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 제1항 (2026.1 시행)

EU에 이어 두 번째 종합 AI 규제체계.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최종결과 도출의 주요 기준과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

한계 '개요' 수준의 설명 의무로, 구체적 공개 범위·검증 절차는 미비한 상태임.

현황 요약

균형의 '틀'은 갖췄으나, 작동시킬 '구속력'이 없다.

독점권과 공정이용으로 양측을 조율하는 설계는 존재하지만, 학습데이터 공개를 강제하거나 옵트아웃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 블랙박스 불균형은 완화되지 않는다.

해외 법제 비교

EU

법적 구속력 있는 투명성 + 옵트아웃 체계

AI Act 제53조

범용 AI 제공자에게 학습 콘텐츠의 '충분히 상세한 요약' 공개를 의무화. 2025년 AI Office가 표준 템플릿(TDS)을 마련해 데이터 규모·대규모 공개셋·라이선스/웹스크래핑/이용자/합성 데이터에 대한 서술적 설명을 요구한다.

CDSM 지침 제4조

권리자가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학습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AI 기업이 이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옵트아웃 체계를 운영한다.

일본

폭넓은 TDM 면책 + 표적 학습 예외

저작권법 제30조의4

저작물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해 AI 학습에 폭넓은 면책을 부여한다.

예외

특정 작가를 표적으로 한 집중 학습이나 유료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수집은 명시적으로 예외로 두어 권리자를 보호한다.

정보 제공

2024년 3월 문화청 가이드라인으로 학습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

두 모델의 공통점

투명성을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

경로는 다르지만(EU=공개·옵트아웃 의무화, 일본=면책+예외), 두 나라 모두 권리자가 학습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제도 안에 마련해 두었다.

한국 법제의 공백 진단

	EU	일본	한국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법적 의무	가이드라인 제공	'개요' 설명 의무
옵트아웃 법적 구속력	의무	예외 규정으로 보호	부재
TDM 면책 조항	명시	명시	부재

진단

한국에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공시 의무도, 옵트아웃 체계도 아직 없다.
TDM 면책은 입법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공개 의무는 '개요' 수준의 권고에 그친다. 데이터 출처를 검증할 독립 기구 역시 필요성이 논의되는 단계다.
이 진단은 향후 저작권법·AI 기본법 개정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출발점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

학습데이터 공시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를 사업자가 먼저 드러내게 한다. EU의 '충분히 상세한 요약'과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의 '개요' 설명이 이 선택지에 해당한다.

옵트아웃 체계

권리자가 '학습 거부'를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사업자가 이를 확인·준수하게 한다. EU CDSM 제4조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모델이다.

독립 검증 체계

기업의 자율 공개를 넘어, 제3의 독립 기구가 데이터 출처를 검증한다. 통제·검증 권한이 기업에 집중된 구조를 분산시키는 선택지다.

세 항목의 상호작용

각 항목을 결합하여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거버넌스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독립기구 설립의 의의와 한계

세거버넌스 구조

통제 누가 학습데이터를 통제하는가

검증 누가 검증 권한을 가지는가

책임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분담하는가

필요성

통제·검증 권한이 기업에 집중된 구조에서 자율 공개만으로는 실질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출처 공시와 학습데이터 검증을 담당할 제3의 독립 감사기구·공공 기반 검증체계가 논의된다.

현실적 한계

- 독립적 검증기관 선정의 문제
- 영업비밀과 이용자 권리 간의 균형
- 감사 시 필요한 자원 확보
- 권력 독점 발생 가능

핵심

거버넌스 안에서의 독립기구 설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독립 감사 기구를 설계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정부

제도 설계자

공시 기준 마련과 제도 설계.
영업비밀과 알 권리 사이의 균형
기준을 구체화한다.

기업

데이터 관리자

학습데이터 관리와 책임성 확보.
과도한 영업비밀 침해 없이 공시.
감사에 참여할 조건을 요구한다.

창작자

권리 주체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학습
여부 확인.
입증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다.

시민사회

감시자

데이터 신뢰 구조에 대한 감시와
참여.
플랫폼 권력에 대한 외부 견제 기
능을 말한다.

청년·미래세대

참여 주체

거버넌스 참여 방식의 설계. 미래
디지털 신뢰의 당사자로서 논의
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 만들기

학습데이터 투명성은 특정 기업이나 권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로 작동하는 디지털 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이다.
다섯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거버넌스 설계의 출발점이다.

논의 질문 ①

핵심 질문

학습데이터 공시 의무를 부과할 때, 영업비밀 보호와 공공의 알 권리 사이에서 어떤 균형 기준을 설계해야 하는가?

공개 수준

ex) 세부 URL·데이터 목록까지인가, 데이터 유형·비율 중심인가.

적정성

ex) 공공 신뢰와 산업적 현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개의 깊이는 어디까지인가.

기업 보호장치

ex) 과도한 영업비밀 침해 위험 없이 공시·감사에 참여하게 할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

목표

한국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공개 범위, 법적 보호 장치의 마련 등을 통해 적절한 균형의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

논의의 근거

2024.12

BSA(MS·AWS 등) 데이터 공개 의무화 반대 의견

2025.01

문체부,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저작권법 개정안 추진

2026.01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 제34조 ‘학습용데이터 개요’ 설명 의무

2026.02

KBS·MBC·SBS, OpenAI 상대 소송

권리자 입증의 어려움 표면화

논의 질문 ②

핵심 질문

유사한 해외 법안을 고려할 때, 한국 저작권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상황

인공지능기본법은 포괄적 내용을 다루지만 TDM 면책·학습데이터 관련 구체 조항은 다루지 않으며, 이는 기존 저작권법에서도 동일하게 빈 채로 남아 있다.

참고 입법례

EU AI Act 제53조

AI 학습 데이터 요약본 공개를 요구해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자가 학습된 데이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TDM 면책을 명시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학습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

시사점

두 법제 모두 '면책의 범위'와 '확인 가능성'을 동시에 설계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친다.

목표

TDM 면책의 범위와 창작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해외 기준을 답습하기보다, 한국형 균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기대 결과

①

법제 공백의 구체적 진단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현행 저작권법·AI 기본법이 학습데이터 투명성을 다루는데 어디서 공백이 발생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②

이해관계자 권한·책임 논의 심화

정부·기업·창작자·시민사회·청년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그 입장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③

공존 가능한 거버넌스 방향 모색

창작자 보호와 AI 산업 발전이 충돌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어떤 제도가 그 균형을 실현할지를 탐색한다.

감사합니다.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저작물 포함 여부 판별 메커니즘과 거버넌스 수립 방안

발표자 한서연, 김세현, 이은선

패널 소개

좌장 & 패널

장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학생

패널 1 · 법제도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패널 2 · 학계

안상수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패널 3 · 개인정보

이창범

법무법인 김앤장 박사

동국대학교 교수

패널 4 · 지식재산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